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심창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09:00~16:30)(7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18일 (12:00~15:00)

나. 선거장소: 심창초등학교 도서실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3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2년 3월 15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7일

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서식1】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안 내 장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에서는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부디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등록기간: 2022. 3. 8. ~ 3. 14.(7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2022. 3. 14. ~ 3. 15.(2일간)

◇ 선거방법: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및투표 우편 가능

- 투표용지회수(가정통신문): 2022. 3. 16. ~ 3. 17.(2일간)

◇ 투표일시: 2022. 3. 18. 12:00 ~ 15:00

2022년 3월 7일

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전 화		H.P	
학생성명	학년 반 성명		
자격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경 력	사회경력, 운영위원 경력 등 기재	직업	
입후보 소견			
<p>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4기 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3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입후보자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심창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p>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수집하며, 결격사유 조회 회신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심창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범죄경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학교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